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107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18.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소480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며느리 C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3. 11. 6. 지인 D의 소개로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E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9. 이 사건 계좌로 98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계좌를 동거인 F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F에게 교부한 상태였다.

라. 이 사건 계좌에 위와 같이 980만 원이 입금되고 약 1시간 후 1,000만 원이 G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980만 원은 원고의 착오로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D은 원고에게 98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이자를 더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계좌로 위 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F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D의 위 편취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98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980만 원을 송금하기 3일 전인 2013. 11. 6. E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점, 원고는 2019년경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위 980만 원은 D의 소개로 E에게 추가로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원고는 위 사건에서 D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자 비로소 송금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2020. 3. 2.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위 980만 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당일 1,000만 원이 G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좌로 위 980만 원을 송금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9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원고로부터 위 9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복열, 판사 김현진, 판사 신형철